

<2008-1 농업정책학회 세미나 발표문>

# 왜 선진국은 곡물 수출국인가?

2008. 4.

전찬익, 허용준  
(농협경제연구소)

# I. 선진국은 대부분 곡물 수출국이다

## 1. 주요 국가의 곡물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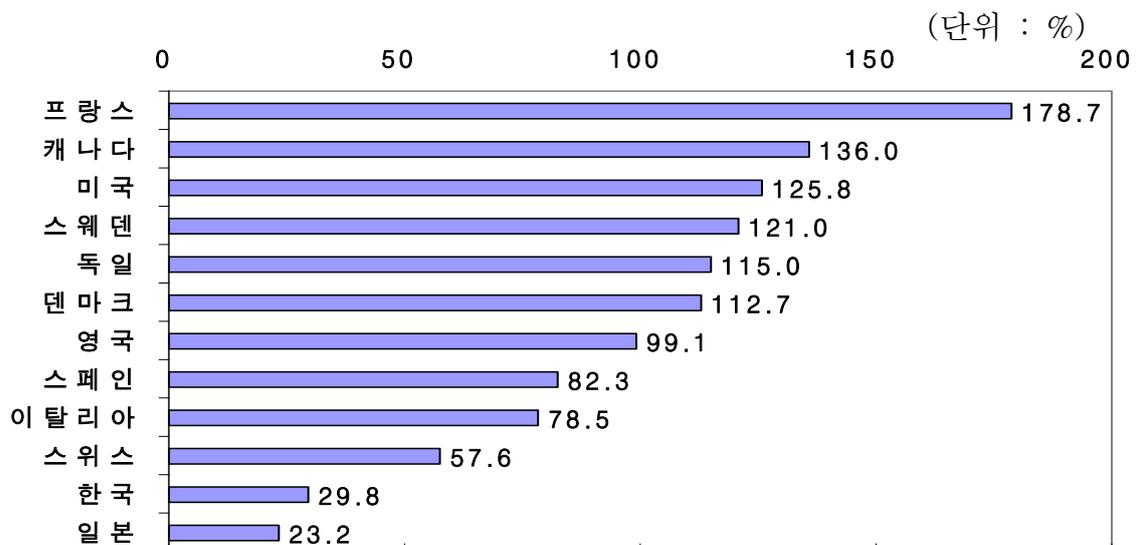
### □ 곡물자급률 수준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지표

- 곡물의 국내소비량에 대한 국내생산 공급능력을 표시
  -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국내생산+ 수입-수출±재고)
- 국내생산량 뿐만 아니라 무역량(수입량, 수출량)이 자급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 □ 대부분의 선진국은 높은 수준의 곡물자급률 유지

- 3개년(2001~2003)간 주요 선진국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대부분 80% 수준 이상을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30%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주요 국가의 곡물자급률(2001~2003 평균)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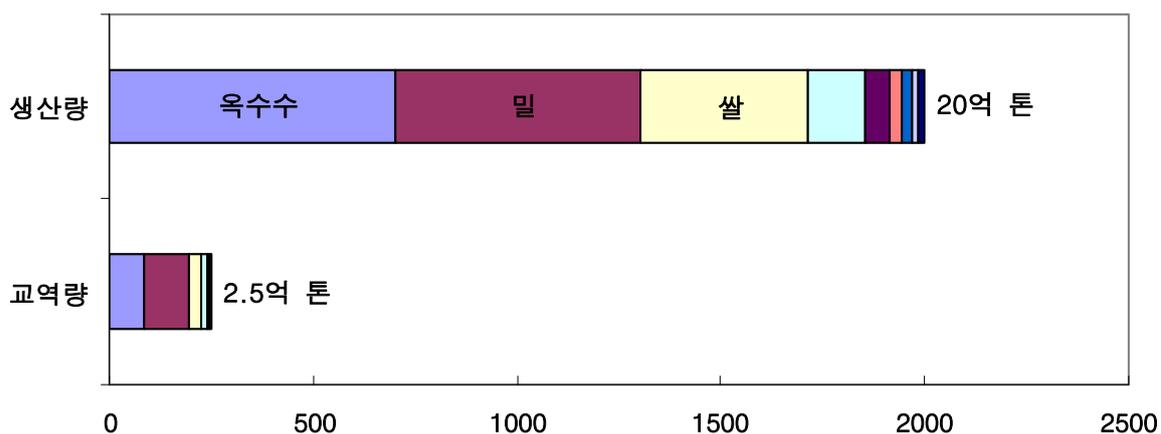
## 2. 세계 곡물교역량과 수출국

### □ 연간 세계 곡물교역량은 생산량의 13% 수준

- 연간 세계 곡물 생산량 20억 톤 중 2.5억 톤 교역
- 옥수수, 밀, 쌀 등 3대 곡물이 전체 곡물 생산량의 86%, 전체 곡물 교역량의 90%를 점유

#### < 세계 곡물 연간 생산량과 교역량(2003~2007 평균) >

(단위 : 백만 톤)



구분	생산량(백만 톤)		교역량(백만 톤)		b/a (%)
	(a)	비중(%)	(b)	비중(%)	
옥수수	702.57	35.1	84.63	33.9	12.0
밀	599.65	30.0	110.57	44.3	18.4
쌀	410.17	20.5	29.25	11.7	7.1
보리	140.53	7.0	15.79	6.3	11.2
수수	59.15	3.0	6.37	2.6	10.8
기장	33.02	1.7	-	-	-
귀리	24.89	1.2	2.11	0.8	8.5
호밀	14.42	0.7	0.68	0.3	4.7
혼합곡	14.43	0.7	-	-	-
총계	1,998.83	100.0	249.4	100.0	12.5

자료 : USDA-FAS, PSD Online

□ 세계 곡물수출량의 2/3를 상위 5개국이 점유하며, 이들은 농경지가 많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

- 이 중 미국이 연간 세계 곡물수출량의 37%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이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EU-27(밀, 보리, 옥수수, 호밀 등) 순
- 반면 수입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 EU-27(밀, 옥수수, 수수, 쌀 등) 멕시코, 한국, 이집트 등이며 이들 5개국이 세계 곡물수입량의 1/3을 차지

< 세계 5대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2002~2007 평균) >

(단위 : 백만 톤, %)

순위	수출국			수입국		
	국명	수출량	비중	국명	수입량	비중
1	미국	91.35	36.6	일본	26.00	10.8
2	아르헨티나	24.56	9.8	EU-27	15.20	6.3
3	캐나다	19.87	8.0	멕시코	14.22	5.9
4	호주	17.69	7.1	한국	12.48	5.2
5	EU-27	17.43	7.0	이집트	12.23	5.1
	계	170.9	68.5	계	80.13	33.3

자료 : USDA-FAS, PSD Online

□ 품목별로는 밀 수출량의 73%, 옥수수 93%, 쌀 82%를 각각 상위 5개 수출국이 점유

- 밀: 미국(26.4), 캐나다(14.5), 호주(11.9), EU-27(11.4), 아르헨티나(9.2)
- 옥수수: 미국(62.6), 아르헨티나(15.4), 브라질(6.9), 중국(5.8), 우크라이나(2.0)
- 쌀: 태국(29.6), 베트남(16.2), 인디아(14.6), 미국(11.6), 파키스탄(9.5)

## II. 왜 선진국은 곡물 수출국인가?

### 1. 선진국 농정의 핵심

#### 가. 미국 : 가격·소득지지와 환경보전정책

##### □ 가족농의 보호와 가격·소득지지가 미국 농정의 핵심

- 국가건설 초기 개척 농지를 저가에 많은 사람에게 소규모씩 분배한 결과(Homestead Act, 1862) 다수의 가족농이 탄생하였고, 이 자작제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곡물자급을 이뤄냄
- 대공황으로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나 가족농이 위기에 처하자, 1933년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commodity loan)를 법제화하여, 현재 직접지불, 수출지원, 소비촉진 활동 등 지지농정의 근간을 마련

##### □ 환경보전은 또 하나의 미국 농정의 핵심 축

- 미국 농정에서 환경보전은 1920년대부터 중요한 요소였고, 그 중요성과 비중이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
- 1920년대 말부터 토양침식 문제가 제기되어 「토양보존청」이 설치되고, 1985년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10~15년간 휴경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CRP) 도입
- 2002년 농업법에서는 농지보전보장제도(CSP)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 정책은 더욱 다양화되고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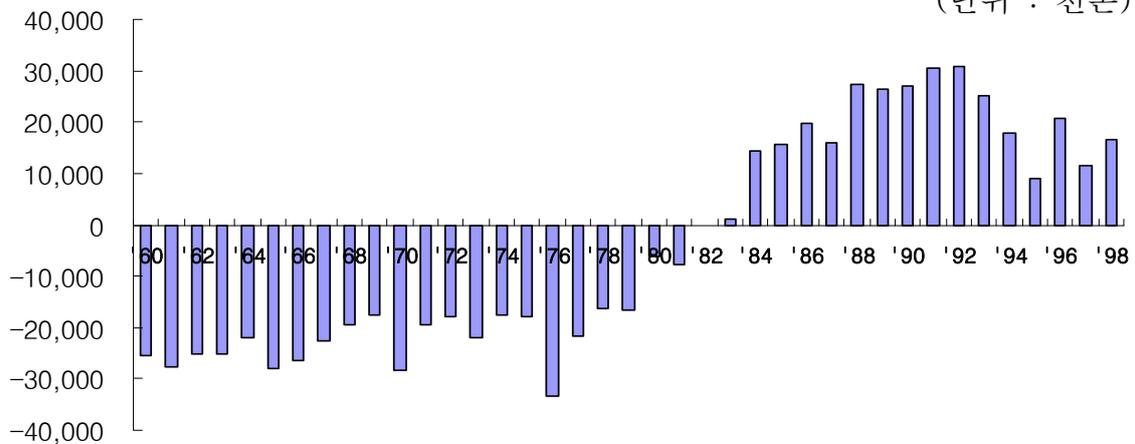
## 나. EU : 가격·소득지지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정책

### □ CAP 태동기 식량안보가 EU 농정의 중요한 목적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사태와 농업생산의 후진성 등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을 실시
-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개입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생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결과 1983년부터 곡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 EU-15 곡물 순교역량(수출량-수입량) >

(단위 : 천톤)



자료 : USDA-FAS, PSD Online

###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EU 농정의 두 번째 주축

- 유럽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개발은 EU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력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
- 3차례의 농정개혁을 통해 CAP은 직불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2. 선진국의 농가 소득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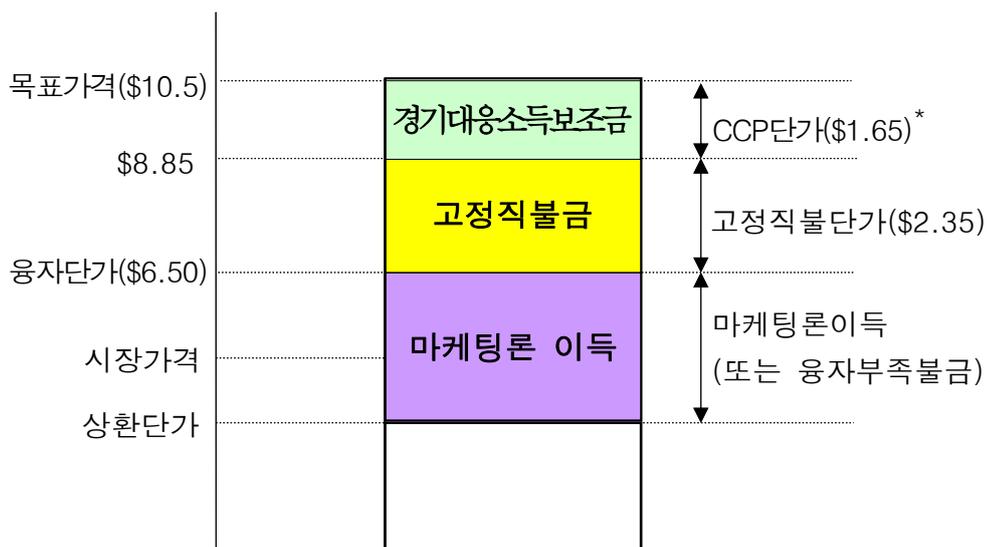
### 가. 미국 :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마케팅론과 고정직접지불제, 경기대응소득보조(CCP) 등으로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

$$\text{총보조금} = \text{마케팅론이득} + \text{고정직접지불금} + \text{경기대응소득보조금}$$

- 목표가격을 사전에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이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목표가격제를 시행
- 농가는 마케팅론을 통해 용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마케팅론 이득)을 수취하며, 매년 일정액의 고정직접지불금을 받음
- 또 용자단가(혹은 시장가격)와 고정직접지불 단가의 합계액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보전 받음

#### <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 구조(쌀 100파운드당) >



\* CCP단가=목표가격-유효가격(용자단가와 시장가격 중 높은 것+ 고정직불 단가)

□ 마케팅론의 보전수준은 용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

- 농가는 '시장가격 > 용자단가' 일 때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용자금을 상환하고, '시장가격 < 용자단가' 일 때는 용자단가보다 낮은 상환단가로 상환함
- 따라서 농가는 시장에 판매한 수입과 함께 용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을 보전 받는 셈
- 농업인 당 연간 보조금 상한은 75,000달러이며,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면화, 쌀, 콩, 수수, 보리, 귀리, 유지종자, 병아리콩, 완두콩, 녹두콩, 땅콩, 꿀, 양모, 염소모 등임

□ 고정직접지불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단가에 기준단수와 기준면적의 85%를 곱한 금액

- 기준면적은 1981~1985년 평균 혹은 1998~2001년 평균이며, 기준단수는 1981~1985년의 평균임
- 농업인당 연간 보조금 상한은 40,000달러이며,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면화, 쌀, 콩, 수수, 보리, 귀리, 유지종자, 땅콩 등임

□ 경기대응소득보조금은 미리 정해진 목표가격에서 유효가격을 차감한 보전가격에 기준단수와 기준면적의 85%를 곱한 금액

- 기준단수와 기준면적 산정 방식은 고정직접지불제와 비슷함
- 농업인당 연간 보조금 지급 상한은 65,000달러이며,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면화, 쌀, 콩, 수수, 보리, 귀리, 유지종자 등임

□ 최근 5년간(2002~2006년) 농가에 지급된 연간 직접지불금은 164억 달러에 달함

- 이는 같은 기간 농업소득 총액의 26% 수준

< 미국의 농업소득과 직접지불금 >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직접지불금 (Direct government payments)	12.4	16.5	13.0	24.4	15.8	16.4
농업소득 (Net farm income)	40.2	60.4	85.4	73.8	59.6	63.9
직접지불/농업소득	30.8	27.3	15.2	33.2	26.5	25.7

자료 : USDA-ERS(2008.3.)

□ 특히 쌀 농가는 호당 6만 달러의 직접지불금을 받아 전체품목 중 호당 직접지불금이 가장 많음

- 이는 2004년 쌀 농업소득의 58% 수준

- 다음으로 면화가 호당 42,728달러, 옥수수가 18,578달러, 콩이 8,157달러의 순임

< 주요품목 호당 농업소득과 직접지불금(2004년) >

(단위 : ha, 달러/호, %)

주요 품목	호당 경지면적	호당 농업소득(a)	호당 직불금(b)	비중(b/a)
쌀	160.8	104,523	60,213	57.6
면화	201.0	97,020	42,728	44.0
옥수수	79.2	43,766	18,578	42.4
콩	92.3	29,430	8,157	27.7

자료 : USDA-ERS(2006.2.)

## 나. EU : 농가단위 단일직접지불제

### □ EU의 농업·농촌부문은 중요한 정책 영역 중 하나

- EU 공동예산 중 농업부문 예산이 절반을 차지
  - 2002~2004년 평균 농림예산 : 53.0억 달러
  - 2002~2004년 평균 전체예산 : 116.5억 달러
- 농촌지역은 유럽 전체면적의 80%이고 전체인구의 25% 차지

### □ EU는 1992년부터 3차례 농정개혁을 거듭 단행하고 2005년부터 품목별 직불제를 통합하는 방식의 단일직접지불제 시행

- 1992년 CAP 개혁을 통해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보상직접지불제도(Compensatory Payment)를 도입
- 아젠다 2000개혁, 2003년 중간점검을 통해 지지가격을 더욱 인하하고 단일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를 도입

### < EU 곡물 소득지원정책의 변화 >

(단위:유로/톤)

개입가격 (155)	인하폭의 100%보전	보상직불제 (54.34)	인하폭의 50%보전	보상직불제 (63.00)	동결	단일직불제 (63.00)
	30%인하	개입가격 (119.19)	15%인하	개입가격 (101.31)	동결	개입가격 (101.31)

<1992 CAP개혁> <Agenda 2000> <2003 중간점검>

- 농가별 직불금 단가(유로/ha)는 2000~2002년 동안 지급받은 품목별 연평균 직접지불금을 면적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 농가가 기준연도에 받았던 보상직접지불금의 합계액이 단일직접지불제에 의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됨
  - 대상품목 : 기존의 곡물(쌀포함), 유지종자, 단백질 작물, 아마, 삼, 아마씨, 가축과 새로이 듀럼밀, 식용콩, 종자, 사료용 건초가 포함됨
  
- 지급방식은 농가별 직불금 단가, 즉 보조금 수급권한(payment entitlement)을 농가에 부여
  - 보조금 수급권한은 농가별로 ha당 받을 수 있는 단일직접지불액이며, 농가마다 다름
  - 농지의 매매와 상관없이 농가 간 거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유화함
  
- 단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서 농가는 법적 영농조건과 바람직한 영농조건을 준수해야 함
  - 교차준수 의무(cross compliance)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보조금액을 삭감
  - 법적 영농 준수 의무 : 환경보전, 공공성 동물과 식물의 건강, 가축의 등록, 가축질병의 신고, 동물보호 등
  - 바람직한 영농 준수 의무 : 휴경지에서 토양침식, 토양 내 유기물질, 토양구조, 최소한의 이용가능성 및 경관 가치 유지 등

□ 보조금 수령액이 큰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을 연차별로 감축하여 농촌개발 분야에 지원

- 농촌개발 분야의 지원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농가의 보조금을 감축하여 보조금 편중 현상 완화
- 보조금 수령액이 5,000유로 이상인 농가의 보조액을 2005년 3%, 2006년 4%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감축

□ 지난 7년간(1995~2001년) WTO에 통보된 EU의 농업보조금은 연간 936억 유로에 달함

- 무역을 왜곡하는 감축대상보조금(AMS),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금(블루박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직접지불금(허용보조), 수출보조금 등이 포함

< EU의 국내보조 지급 현황 >

(단위 : 10억 유로)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1.국내보조 총액	90.5	95.4	89.3	86.7	90.0	88.3	84.5	89.2
AMS	50.0	51.0	50.2	46.7	47.9	43.7	39.3	47.0
최소허용보조	0.8	0.8	0.5	0.4	0.4	0.6	0.8	0.6
블루박스	20.8	21.5	20.4	20.5	19.8	22.2	23.7	21.3
허용보조	18.8	22.1	18.2	19.2	21.9	21.8	20.7	20.4
2.수출보조	4.9	5.6	4.4	5.3	5.6	2.8	2.6	4.4
계(1+ 2)	95.4	101.0	93.7	92.0	95.6	91.1	87.1	93.6

자료 : WTO(2006)

### 3. 선진국의 농지보전정책

#### 가. 미국 : 세계 최대의 농지 보유국

□ 자국 내 식량공급을 위한 충분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지보전 철학이 확고함

- 2003년 기준 경지면적은 국토의 18.6% 수준인 1억 8천만 ha로 세계 경지면적의 11.6%나 보유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30.2ha로 세계 3번째

- 미국은 농지보전이 식량안보, 경제적 기회 창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생활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농업관을 가지고 있음

· 루즈벨트 대통령(1930년대) : 「땅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각자가 다양한 농지보전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1935년 「토양보전법」 제정 이후, 농지의 전용방지를 위한 「농지보호정책법(1981)」을 제정하였고, 1996년부터는 「농지보호프로그램」을 운영

- 주정부는 각종 농지세 감면, 농업구역 지정, 도시성장한계 설정 등 농지보전에 노력

- 지방정부는 농업보호지역 지정, 영농권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농지보전 도모

□ 민간 또는 민관공동 운영체인 「토지신탁(Land Trust)」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있음

- 토지신탁은 농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편화된 제도로 농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가진 농업인들로부터 개발권이나 지역권을 구입하여 농지를 보전
- 미국에는 1천개가 넘는 토지신탁이 있음

< 미국의 주요 농지보전정책 >

구 분	주요 농지보전정책 내용
연 방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보전법(1935) : 토양침식 방지</li> <li>○ 농지보호정책법(1981) : 연방정부 사업 시 농지전용 최소화</li> <li>○ 농지보호프로그램(연방농업개선및개혁법, 1996) : 미 농무부가 농지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보전지역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li> <li>○ 보전유보계획(CRP;1985년 농업법) : 장기 휴경 시 보조금 지급</li> <li>○ 농지보전보장제도(CSP;2002년 농업법) : 농지를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한 농민에게 해마다 보상하는 조치</li> </ul>
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세 감면 및 세액공제</li> <li>○ 농업보전 지역권취득 프로그램 :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개발을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불</li> <li>○ 농업구역 지정 :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업적 농업이 장려되고 보호되는 구역을 설정,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li> <li>○ 성장관리법 : 도시 확장의 시기와 단계를 조절</li> <li>○ 주지사의 행정명령 : 농업과 농지가 주에서 중요하다는 명령 발령</li> </ul>
지 방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보호지역 지정 : 1970년대 중반부터 지정하기 시작</li> <li>○ 개발권이전 프로그램 : 농업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개발을 이전</li> <li>○ 영농권 조례 : 불법방해소송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써 농지를 보호하는 방법, 모든 주가 채택</li> </ul>

자료 : 나승렬(1999)

## 나. EU : 농지와 농촌지역 공간 보전

□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농지보전제도를 운용

-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2003년) : 영국 5.7ha, 독일 6.7ha, 프랑스 11.3ha
- EU는 일시적으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휴경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지소유 및 전용 규제 등 직접적인 농지보전 정책도 운용

### < EU 주요국의 농지보전정책 >

구 분	주요 농지보전정책 내용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농업·농촌보전청을 설립, 농지보전업무를 관장</li> <li>○ 우량농지 전용 시 농업부 장관의 협의제 운용</li> <li>· 국토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계획수립자는 등급 1과2 및 3a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li> </ul>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국토정비법에서 우량농지의 전용제한 원칙을 규정</li> <li>○ 토지거래법에 의거 농지거래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막지는 않으나, 비농업인과 같은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할 농업인의 농지선매권을 보장</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를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li> <li>○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지의 권리이동은 현지사에게 신고</li> <li>· 각 현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지사의 허가 필요</li> </ul>

자료 : 농림부(2001)

□ 최근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공간의 보전과 지속을 강조

- 농촌지역 공간은 농업의 식량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농지보전,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의 환경보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가족 경영 농가의 존재 자체가 전원의 한 요소이고 이들이 농촌지역 및 사회의 지속에 기여한다고 보고, 농촌지역 공간과 사회 보전 추구

< EU 농촌지역 공간 보전정책 >

구 분	주요 농촌지역 공간 보전정책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관리인 시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li> <li>·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장려하고, 전원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적합하게 토지를 관리 또는 운영</li> </ul>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li> <li>· 1980년대 중반부터 저투입 및 조방화 농업의 장려, 휴경 장려금 지급</li> <li>· 조방적 초지경영, 농지 경영, 유기농업 프로그램으로 구성</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농업계약(CAD)</li> <li>· 자연자원보존, 합리적인 토지이용농업과 국토관리를 연계하여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환경 및 경관보전과 같은 국토관리의 목적을 달성</li> </ul>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 Ⅲ. 시사점

- 세계 곡물교역량은 경지가 넓고 소득수준이 높은 소수의 수출국과 인구밀도가 높은 다수의 수입국으로 양극화되는 경향
  -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EU-27 등 상위 5개 수출국이 연간 세계 곡물수출량의 2/3을 점유
    - 이 중 미국이 세계 곡물수출량의 37%를 점유
  - 반면 일본, EU-27, 멕시코, 한국, 이집트 등 상위 5개 수입국이 연간 세계 곡물수입량의 1/3을 점유
  
- 미국·EU 등 곡물수출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농업·농촌 보호정책을 전개해 옴
  - 미국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가족농의 보호와 가격·소득지지가 농정의 핵심이었으며, 토양침식 방지 등 환경보전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
  - EU는 공동농업정책(CAP) 태동기부터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가격지지 농정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1983년부터 곡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됨
  
- 이들 선진국은 농지의 생산성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공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농지보전 정책을 시행해 옴
  -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농지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토지신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있음

- EU의 경우에도 농지소유 및 전용 규제 등 직접적인 농지보전 체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공간과 지역사회의 유지 정책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음

□ 최근에도 미국·EU 등 선진국은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농업·농촌에 쏟아 붓는 등 보호농정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이 최근 5년간(2002~2006년) 농가에 지급한 농업보조금(직접지불금)은 연평균 164억 달러로 농업소득의 26%에 달함
-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금(1995~2001년)은 연평균 936억 유로 수준
-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지원규모(2005년)는 미국이 14.6%, EU 22.3%, OECD 국가 평균 15.5%(한국 5.0%)에 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를 전제로 한 농업보호와 농촌지역 공간 유지 등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 수준으로 세계 4위의 수입국임
- 농촌지역을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일정 수준의 농지가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개발해야 할 곳은 계획적,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농지전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생산적 활용, 농외취업기회 확대 등 농촌형 소득창출 활동에 대한 투자와, 급격한 시장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소득보조 확대 필요

## < 참고문헌 >

- 김태훈·윤태연·최운영,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07.3.
- 나승렬,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직무파견활동 결과보고서, 농림부, 1999.4.
- 농림부,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제도 설명자료, 2001.12.
- 이정환 외,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제30호, GS&J institute, 2007.1.
- 임상봉, "세계 여러 나라의 농지보전정책",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74호, 200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7.
- 허용준,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농협경제연구소 CEO Focus 제164호, 2006.9.
- \_\_\_\_\_, 「WTO·FTA 체제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대책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 USDA-ERS. 2008 Farm sector income forecast, 2008.3.
- USDA-FAS, PSD Online, <<http://www.fas.usda.gov>>.